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72명 공개, 308명 신용제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월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8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3년 동안('23.7.13.~'26.7.12.)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으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되었으며,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035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18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일한 만큼 제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이를 위반한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계획을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하창용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이강욱 (044-202-7521) 백승희 (044-202-7538)



- (개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도입(‘12.2.1. 「근로기준법」 개정 / ‘12.8.2. 시행)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

- ① (명단공개: 근로법 43조의2)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 고용부 누리집 등에 **3년간 공개 + 7년간 신용제재**
 - ② (신용제재: 근로법 43조의3) 제재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2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7년간 신용제재**(대출·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 ③ (제외대상) ① 체불사업주 사망·실종선고, ② 체불임금 전액 청산, ③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④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⑤체불임금 일부를 청산하고 청산계획을
소명하여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신용제재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
- ④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여부를 심의,
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위원:10명(장관지정 고위공무원 3명, 장관위촉 외부위원 7명)

- (현황)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명단공개 3,035명, 신용제재 5,184명

(단위: 명)

구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명단공개	3,035	290	183	344	116	403	365	385	362	150	265	172
신용제재	5,184	505	290	558	191	675	607	673	647	292	438	308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사례

- ❶ 경북 영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A씨는 근로자 15명에게 3년간 2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여 6회 유죄판결(징역 1년 포함)을 받았고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다고 변명만 하고 청산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명단공개
- ❷ 경기 평택에서 제조업을 하는 B씨는 수차에 걸쳐 근로자 26명에게 3년간 1억 7천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하는 등 2회 유죄판결(징역 8월 포함)을 받아 명단공개
- ❸ 서울에서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C씨는 수차에 걸쳐 근로자 41명에게 3년간 임금, 퇴직금 합계 1억 7천여만 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여 4회 유죄판결을 받아 명단공개
- ❹ 경기 파주에서 텐트 제조업을 하는 D씨는 근로자 26명에게 3년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9천여만 원을 체불하여 3회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해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 외에 이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명단공개